

청구인 연명부

감사청구 제목 :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국토부의 용산공원 시범개방 결정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청구

감사청구 사항(☞ “국민감사청구서 4. 감사청구사항”에 기재한 청구사항별 제목을 아래에 기재)

- ① 대부분의 오염물질 검출량이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치(공원으로 이용이 가능한)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‘용산공원’이 라는 이름으로 개방행사를 진행한 위법한 행정행위
- ② 다이옥신을 비롯한 독성물질과 유류오염에 기인한 다수의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함에도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처가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하고 오염정화 없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
- ③ 이상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내포했음에도 관련 경고 내지는 정보제공 없이 불특정 다수(영유아, 노약자를 포함한)에게 화려한 수사에 기댄 홍보 일색의 행사를 정부 주도로 진행한 점 등

※ 본 연명부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, 감사청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원은 필요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가 실제 청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(명의도용 방지)할 수 있습니다.

번호	성명	전화번호	생년월일	직업	주소	서명 또는날인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
청구인 연명부

□ 감사청구 제목 :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국토부의 용산공원 시범개발 결정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청구

□ 감사청구 사항(☞ “국민감사청구서 4. 감사청구사항”에 기재한 청구사항별 제목을 아래에 기재)

- ① 대부분의 오염물질 검출량이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치(공원으로 이용이 가능한)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‘용산공원’ 이 라는 이름으로 개방행사를 진행한 위법한 행정행위
- ② 다이옥신을 비롯한 독성물질과 유류오염에 기인한 다수의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함에도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처가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하고 오염정화 없이 국민을 위협에 노출시킨 행위
- ③ 이상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내포했음에도 관련 경고 내지는 정보제공 없이 불특정 다수(영유아, 노약자를 포함한)에게 화려한 수사에 기댄 홍보 일색의 행사를 정부 주도로 진행한 점 등

※ 본 연명부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, 감사청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원은 필요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가 실제 청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(명의도용 방지)할 수 있습니다.

번호	성 명	전화번호	생년월일	직업	주 소	서명 또는 날인
21						
22						
23						
24						
25						
26						
27						
28						
29						
30						
31						
32						
33						
34						
35						
36						
37						
38						
39						
40						